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28

제출년월일 : 2022.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상에 규정된 통장 임명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 (안 제1조)

나.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 (안 제5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2)「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2. 3. ~ 2. 10.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2.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원할하게”를 “원활하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할하에 통”을 “관할 하에 통”으로, “관할하에 반”을 “관할 하에 반”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통장”을 “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을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통장은 구청장이, 해당 반장은”을 “통·반장을”로 한다.

③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할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원활하게 ---------- ---------- ---------- ---------- ---------- ---------- ---------- ----------.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제2조(통·반의 조직) ① -- 관할하에 통---------- 관할 하에 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삭 제>
③ 통장선정, 추천방법 및 통장의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④ 통장----------.
⑤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삭 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구청장이, 해당 반장은 동장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⑥ ---------- 하나에 해당하는 ---------- 통·반장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면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남궁준
연 락 처	02-3153-8304